

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[2023. 3. 7.(화) 10:00]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3. 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3년 3월 7일
전문위원 장석현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40
- 나. 발의자: 전철규 의원 외 5명
- 다. 발의일자: 2023년 2월 24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2월 27일

2. 개정이유

「주민투표법」 개정(법률 제18849호, 2022. 4. 26. 공포 · 시행)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주민투표청구의 전자서명 도입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, 투표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, 거소 용어 삭제(안 제2조, 제8조 및 제9조)
- 나.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(안 제3조)
- 다. 주민투표 대상 관련 개정(안 제4조)
- 라.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투표청구 인원 완화(안 제5조)
- 마.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정비(안 제8조)
- 바.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사. 조례안 개정사항 관련 서식 개정(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 서식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주민투표법」
- 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- 다. 입법예고(2023. 2. 27. ~ 2023. 3. 6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- 「주민투표법」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및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인원수를 기존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는 상위법인 「주민투표법」에서 재외국민에 대해서 더 이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‘재외국민’ 용어 삭제
- 안 제3조는 「주민투표법」 제5조에서 외국인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‘19세 이상’ 삭제
- 안 제4조는 「주민투표법」 제7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‘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’으로 직접 규정하여 관련 내용 개정
- 안 제5조는 주민자치 및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함

- 안 제8조는 상위법인 「전자서명법」 개정으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, 청구인서명부 작성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개정함
- 안 제12조 ~ 제13조는 「주민투표법」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「주민투표청구심의회」 관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그 외에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(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) 및 띠어쓰기,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주민투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연령 삭제 및 전자서명 제도 도입 등 현행법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,
-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¹⁾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며, 상위법인 「주민투표법」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의 실시요건²⁾에 부합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1) 주민투표 청구 주민의 수 완화 ※ 2022. 11월 통계청 자료 기준

관내 투표인구(만18세 이상)	기준(1/14)	완화(1/20)	비고
499,224명	35,444명	24,961명	10,483명(29.5%) 감소

2) 「주민투표법」제9조(주민투표의 실시요건)

②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.

참고

서식 변경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			
청구인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(성별)	
	주소	(전화번호 :)	
청구의 대상 및 취지			
청구 이유			
<small>「주민투표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</small> <small>년 월 일</small> <small>청구인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</small>			
<small>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</small>			
<small>※ 작성요령</smal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,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. 주소란에는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상의 체류지를 기재 3. 청구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판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고 별지로 작성 			
<small>→</small>			
<small>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</small>			
청구인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(성별)	
	주소	(전화번호 :)	
청구의 대상 및 취지			
청구 이유			
<small>[]신청 []필요없음</small>			
<small>주민투표실시구역 보경 <변경 사유></small>			
<small>「주민투표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</small> <small>년 월 일</small> <small>청구인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</small>			
<small>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</small>			
<small>※ 작성요령</smal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,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. 주소란에는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상의 체류지를 기재 3. 청구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판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체크 5.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,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			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<small>(청구인서명부의 표지)</small> <p>() 주민투표의 청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 구 인 서 명 부</p> <p>서명 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</p> <p>서명주민수: 명</p> <p>OO동(O회동 O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구인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 수 입 자 (서명 또는 날인)</p>	<small>(청구인서명부의 표지)</small> <p>() 주민투표의 청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 구 인 서 명 부</p> <p>서명 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</p> <p>서명주민수: 명</p> <p>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(O회동 O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구인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 수 입 자 (서명 또는 날인)</p>
<small>→</small>	
<small>※ 작성요령</smal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)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,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,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. 2.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, 각 수입자를 모두 적는다. 3.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(O회동 O권)란에는 통·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·반으로 작성한다. 	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청구인서명부

번호	성명	생년월일(성별)	주소	서명 또는 날인	서명 연월일	비고

※ 작성요령

-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.
-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. 다만,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.
-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, 상세주소(동번호, 호수 또는 충수)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.
-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음.
-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지우고,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기재.

□ 주민투표법

제5조(주민투표권)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(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
-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7조(주민투표의 대상)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없다.

1.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
2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
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- 가. 예산 편성 · 의결 및 집행
 - 나. 회계 · 계약 및 재산관리
- 3의2. 지방세 ·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4. 행정기구의 설치 ·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·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

5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6. 동일한 사항(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

제10조(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)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(이하 “청구인대표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여야 하며,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.

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

자격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(이하 “전자청구인서명부”라 한다)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.

1.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

2.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

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.

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, 서명(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. 이하 제11조, 제12조, 제12조의2,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) 요청, 청구인서명부(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주민투표실시구역)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

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·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
 2.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
 3.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·전자개표의 실시
 4.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·도의 부시장·부지사, 시·군·구의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(이하 “부단체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.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-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